미국특허청과 영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젝트 착수

조기심사추진으로 특허 품질과 효율성 향상 기대

미국특허청(USPTO)과 영국특허청(UK IPO)은 지난 9월 4일, 양자간에 수립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출원을 접수받는다고 발표하였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양국 동시출원인 이 연관특허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양국특허청의 신속한 심사처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특허청은 상대특허청의 관련 심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심사부담 경감 및 특허품질 향상도 가능하게 된다.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상호 협력의 깊이와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그 목표는 중복업무의 감소, 처리속도 향상 및 품질향상이며 이번 영국특허청과의 시범사업은 기존의 일본특허청과의 협력을 토대로 수립된 것으로서 더욱 합리적인 국제특허시스템에 기여할 것이라고 미국특허청장이 언급하였다.

한편 영국특허청장은, 미국특허청과의 PPH는 이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특허청간의 형태와 유사하고, 이미 영국특허청은 ISO 9001:2000 인증에 의해 효율성과 품질에 있어 높은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미국특허청과의 PPH 협력은 이 기준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이번 PPH에 의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율성과 품질이 양국특허청의 직접적인 강력한 협력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기쁘며 PPH는 양국특허청이 발명과 혁신을 더욱 촉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어 국제간 PPH 네트워크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도하였다.

PPH에 의하여, 영국특허청 또는 미국특허청으로부터 최소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특허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보받은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해당 청구항에 대한 빠른 심사처리를 다른 특허청에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상세내용 참조:
www.uspto.gov/web/patents/pph/pph_ukipo.html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출원인의 관심사를 측정하는 것과 이 프로그램이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양국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줄이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시범기간은 2008년 9월 4일자로 만료되게 되어 있으나 처리물량과 다른 여타의 요인에 의하여 1년 연장되거나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양국특허청은 시범기간 중에 상호 조정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출처 : USPTO 홈페이지

제공 한정무 차장(정보활용지원팀)